

한·미FTA의 소비자후생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

나 광 식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 목 차 >

- I. 한미FTA와 소비자후생
- II. 부문별 소비자정책 과제
 - 1. 소비자거래부문
 - 2. 소비자안전부문
 - 3. 피해구제부문
- III. 협정문상의 소비자보호

한국소비자원

I. 한미FTA와 소비자후생

- 대미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수입은 2005년 기준 약 1,425억원이며, 한미FTA 체결로 완전 무관세화가 이루어지면 국내소비자에게 최대 가계지출의 15.8%정도 구매력 증대요인이 발생
 - 직접적으로 상품별 수요·공급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관세수입분이 가격인하에 반영
 - 간접적으로 대미수입소비재의 가격인하는 시장경쟁을 통해 국내산 및 타국산 경쟁소비재의 가격까지 인하를 유도
 - 미국산 자본재 및 부분품에 대한 무관세는 국내산소비재의 가격인하 요인으로 작용

<표 1> 무관세화에 따른 구매력 증진효과

(단위 : %, 10억 원)

구매력 증진효과 (구매력 증진금액)	구매력 증진효과의 원천		
	생산자 잉여 및 생산효율화	정부 관세수입	소비 효율화
15.8 (11,770.9)	14.0 (10,405.6)	0.2 (142.5)	1.6 (1,222.8)

주 : 대미소비재수입금액은 2005년 8,916억원으로 대미수입총액(19조1,356억원)의 4.7%.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2006), 한·미FTA의 소비자후생효과 분석.

- 한미FTA협상에서 교육, 의료 등 소비성서비스가 공공성을 이유로 제외됨으로써 소비자선택권의 추가확대 기대는 미흡
 - 미국의 교육·의료서비스 공급자가 국내주재를 통하여 직접 제공한다면 해외소비에 따른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잠재적(한계적) 이용자에게도 선택기회 확대 가능

<표2> 개인의 해외서비스 이용현황(2005)

(단위 : 10억원)

구분	수입(내국인의 해외소비)	수출(외국인의 국내소비)
유학·연수	3,415.2	10.3
의료·오락	171.8	137.1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2006).

II. 부문별 소비자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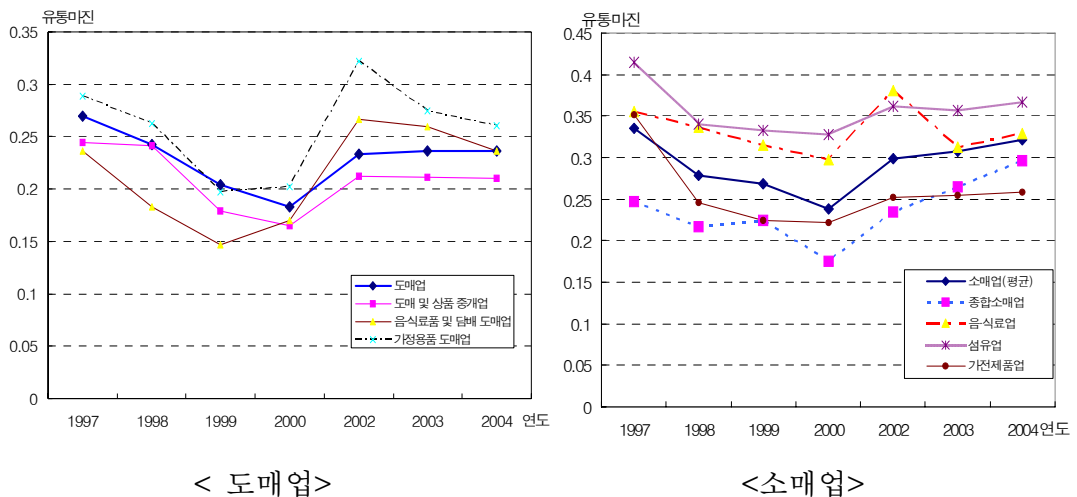
1. 소비자거래부문

가. 현황

- 한미FTA의 관세철폐의 소비자후생증대라는 정책목표의 성패는 사실상 유통서비스시장의 경쟁질서에 크게 의존
 - 한미FTA와 장기적인 원화가치 상승국면의 진행은 어느 때보다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

- 유통서비스시장의 유통마진율은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추세
 - 2000년까지 경쟁촉진(96년 완전개방) 및 소비위축(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유통마진율이 하락
 - 2004년 통신판매업, 의류소매업의 유통마진율은 각각 51.2%, 36.6%
 - 최근 외국계 대형할인점 철수는 국내유통사업자의 성공사례이기에 앞서, 소비자에게는 유통업체 선택권 축소, 경쟁환경 저하에 따른 잠재적 손실이 우려

<그림1> 주요 업종별 소매유통마진 추세



- 세계상품의 전시장으로 불리는 미국시장과 비교해서 국내시장의 소비재가격은 현저히 높은 수준
- 한미FTA에 따른 공동시장 형성은 결국, 한미간 가격차지수의 해소를 통해 소비생활의 질적 제고에 기여해야 할 것임

<표 3> 주요 상품의 한미간 가격차 지수현황

구분	한국	미국
쇠고기	100	19.5
프링글스 과자	100	63.8
청바지(리바이스501)	100	36.4
나이키(AIR MAX)	100	56.1
화장품	100	69.6
LCD TV(46")	100	80.3
MP3(Apple 30G)	100	89.5
자동차	100	63.1

주 : 미국(Florida주)가격은 모든 조사 품목에 소비세 6%를 포함

자료 : 한국소비자원이 2007년 4월중 인터넷 및 현지모니터 조사(대형할인점 기준)하였으며, 자동차 가격은 한국소비자보호원(2006).

나. 정책방안

(1) 소매유통 업체의 전문적 분화 촉진

- 상품의 품질 폭, 경쟁브랜드 등이 다양한 전문양판점을 육성 지원
 - 정보통신기기, 가전제품, 유명의류 등의 생산자가 유통사업자에 대한 수직적 제한을 용이하게 행사할 경우에는 이중마진화에 따른 소비자후생의 손실을 유발
 - 전문양판점의 확산은, 90년말 이후 유통서비스시장을 주도하는 대형할인점에 대하여 업체간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이를 위해 생산자가 유통사업자를 지배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배타적 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전문양판점의 성장을 촉진

(2) 대형소매유통사업자의 거래관행 선진화

- 시장지배력이 강한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이 스스로 유통위험을 감수하도록 거래관행을 개선
 - 유통사업자는 판매 후 재고를 생산자에게 반품함으로써 유통 비효율을 양산
 - 판매원 파견제, 세일참여 강요 등도 생산자의 비용증가 요인이며, 궁극적으로 소비자가격에 전가

(3) 부당한 공동행위관련 행정지도방식 개선 및 감시활동 강화

- 공동행위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추정의 법리(공정거래법제19조제5항)가 해당부처의 행정지도에 의해 방해받는 사례 다발
 - 사업자의 가격설정과 관련한 정부의 행정지도행위는 경쟁법리에 입각하여 집행

- 경쟁사업자의 의식적 병행(추종)행위를 카르텔관점에서 엄격히 감시
 - 에너지, 제분, 주류, 커피, 화장지 등 과점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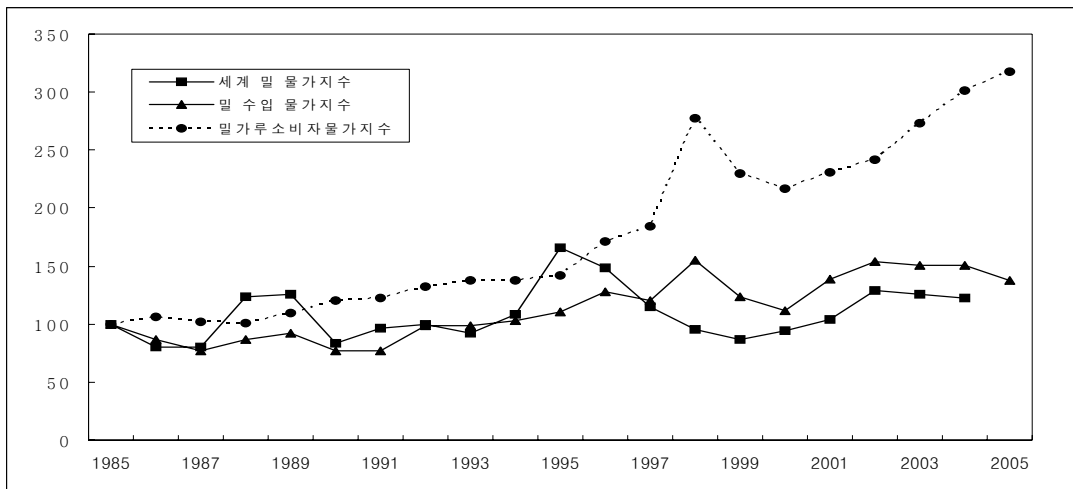
(4) 개방확대의 경쟁촉진 실효성 제고

- 수입소비재를 통한 국내시장의 경쟁을 촉진
 - 소비재 수입에 있어서 소수사업자가 참여함으로써 과도한 수입마진을 책정하고, 국내시장에서 경쟁 실효성이 크게 미흡
 - 수입업자 수의 확충,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 국제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정보제공, 거래안전체계 확충

(5) 장기독점 수입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 대미수입선과 장기독점계약을 통해 고마진,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려는 수입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 예컨대, CR3지수가 75%에 이르는 국내 제분사업자의 밀가루 공급가격은 국제가격 동향과 달리 장기 상승(가격카르텔행위)

<그림 2> 밀(밀가루)관련 주요 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2006).

(6) 수입소비재시장의 브랜드 내(Intra-Brand) 경쟁 촉진

- 병행수입을 저해하는 법제 정비
 - 자동차, 주류, 화장품과 같이 브랜드명성이 소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상품에 대하여 병행수입을 촉진시킴으로써 고마진 해소
 - 현행 화장품법은, 병행수입업자가 해외 경쟁유통채널을 통해 저렴한 브랜드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로부터 제조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관청에 제출할 의무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병행수입 행위를 봉쇄
 - 가정용 의료기기와 일반건강기구의 허가기준에 있어서 모호성을 해소하여 국내신제품 개발능력을 제고

- 다국적 기업의 수직적 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감시 강화
 - 다국적기업은 세계시장의 유통계열화, 판매지역 제한 등을 통해 독점이윤 안정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병행수입을 억제
 - 다국적기업과 국내수입선의 불공정거래 관련 국제계약 감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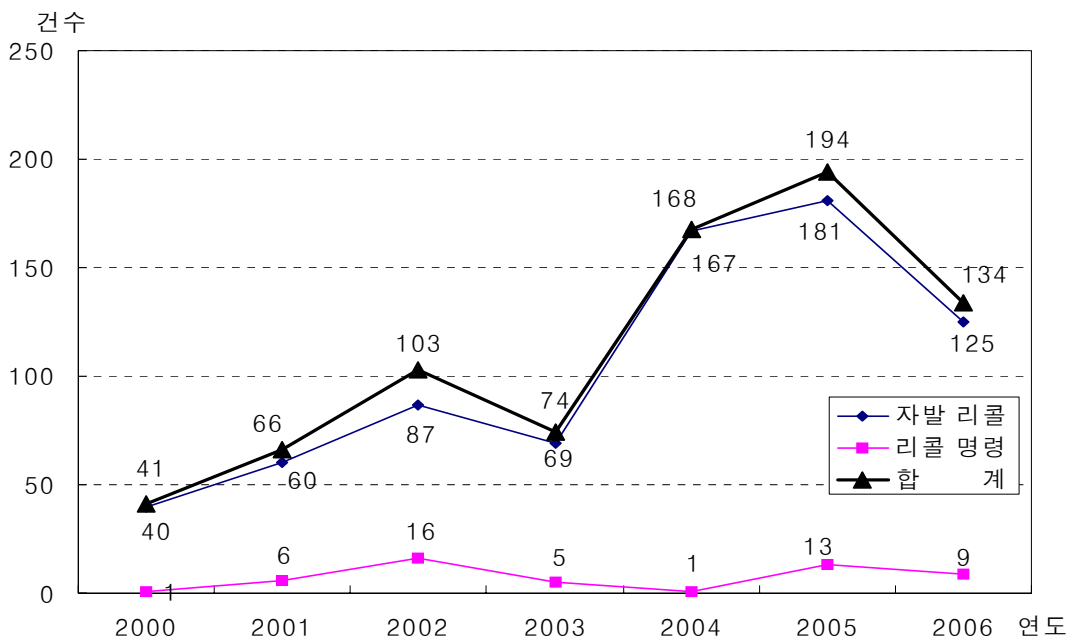
2. 소비자안전부문

가. 현황

- 국내 소비자안전관리시스템은 소비자위해정보의 수집·분석 능력에 있어서 미국과 격차 존재
 - 공산품의 위해정보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CISS)이 수집한 건수는 2006년 약6,200 여건인 반면, 미국의 CPSC(NEISS)는 약30만 여건 내외
 - 수집된 위해정보의 분석·평가과정에서도 자원투입 및 과학성·엄밀성에서 차이

- 우리나라의 소비자위해제품 리콜 조치는 증가추세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비교해서 저조한 수준
 - 2006년도 일반공산품의 리콜조치현황을 보면, 미국은 471건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9건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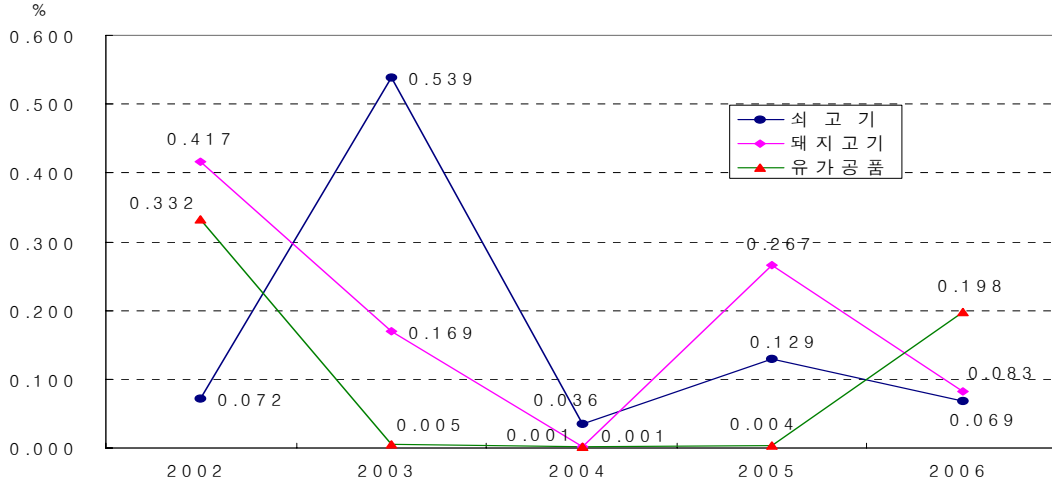
<그림 3> 우리나라 소비자위해제품의 리콜조치 추이



자료 : 재정경제부

- 농수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검역결과 품목별로 수입량(톤)기준 약0.11~0.19%내외 불합격률

<그림 4> 축산물 검역·검사의 불합격률 추이



자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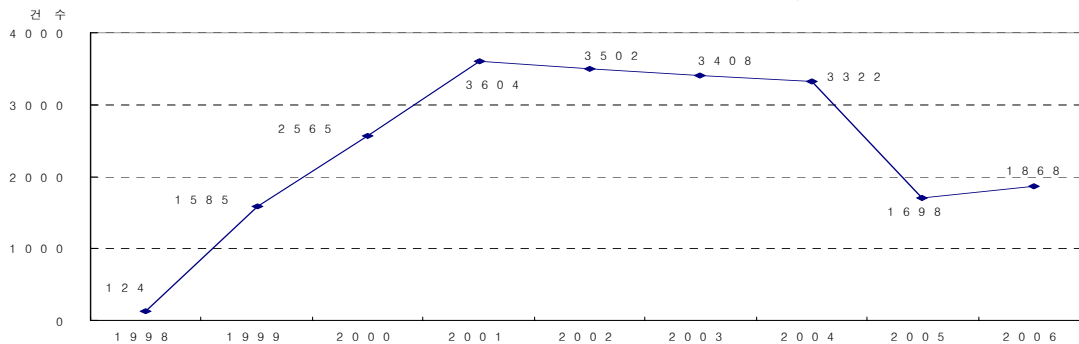
-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2006년 이행율이 97%로써 정착 단계 진입

- 반면, 원산지별 가격차 마진을 획득하기 위해 허위표시하는 경우도 다발

<표 4> 원산지 표시 이행율 추이

연도	1997	2000	2003	2006
이행율(%)	90.4	94.9	96.1	97.0

<그림 5> 허위원산지표시관련 형사입건 수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 정책방안

(1) 소비자안전 전담기관간 안전정보 교류 및 조치 협력

- 소비재 교역 증가에 따른 소비자 안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관 기관간 안전정보 교류 및 안전조치 협력 강화
 - 위해정보 수집 단계에서의 정보 공유
 - 위해정보 분석 단계에서의 정보 교류
 - 안전조치(리콜, 파기, 소송 등)단계에서의 정보교류 및 조치 협력

(2) 수입 농축산물의 안전 검역 및 사후 감시 강화

-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수의과학검역원 등 검역활동 강화
 - 대미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보존처리관련 위해요소에 대한 검역 강화
- 시판중인 농수축산물에 대한 위해성 감시활동 강화

(3) 소비자안전 관련 선택정보제도 운영 강화

-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 충실화
 - 가공·포장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에까지 원산지 표시제 확대운영
 -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단속 강화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내실화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도입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이력추적제 참여확대 유도
- Non-GMO표시제를 사업자 자율제도로 도입

□ GMO 표시제도 운영 충실

- GMO 식품검사 능력 확충 및 표시실태 감시 강화

□ 소비자 대상의 식품 위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수입식품 관련 안전사고나 위해성 논란 등의 여파로 무조건적인 해당식품 기피나 소비자 패닉현상이 발생, 소비자안전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지출 초래
- 소비자의 지나친 안전비용 부담을 막을 수 있는 식품안전이나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3. 피해구제부문

가. 현황

-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한국은 정부중심의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자율구제 중심
 - 우리의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행정 및 공공기관중심의 피해구제업무 수행
 - 미국은 소비자의 자력구제를 원칙으로 하되, BBB(경영개선협회)가 회원사를 중심으로 지원

- 대미소비재 수입의 증가에 따라 관련 소비자피해도 확대될 전망
 - 수입업자가 있거나 미국생산자가 국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국내법과 제도를 적용하여 판매자, 해당 수입업자가 처리
 - 대미수입 품목별로는, 음반·도서, 의류 및 신변잡화 등 전자상거래(해외구매대행) 피해가 다수

<표 5> 대미수입소비 상품·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 추이

(단위 : 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대미수입품 건수	642	1,058	1,138	960	1,238	918
총상담건수	355,750	311,236	321,934	272,942	294,574	309,545

자료 : 한국소비자원 소비넷.

- 미국 현지소비, 대미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양국 조정기관(ADR)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

나. 정책방안

(1) 국경간 소비자피해에의 효과적 대응

- 국내소비자의 해외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의 사전적 예방 노력 강화
 - 국내에서 제공되는 해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해외사업자의 소비자지향적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
 - 예컨대 토플시험의 경우, 응시취소의 환불비용, 부당한 환불절차관련 소비자불만 팽배
 - 미국 사업자의 한미 소비자차별에 대한 불공정 약관의 심사 강화

- 전자상거래 사기성 상행위에 대한 정보교류 및 집행협력 구축
 - 양국간 온라인 사기정보에 대한 정보공유
 - 사기성 상행위에 대한 감시, 행정조치의 공동대응
 - 미FTC의 국제소비자피해정보망(www. econsumer.gov) DB를 공유하여 미국기반 전자상거래 피해에 효과적 대응

(2) 양국 소비자분쟁 조정기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 양국 소비자불만 및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분쟁조정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
 - 행정 및 공공기관중심의 피해구제에 익숙한 국내소비자의 보상권 리 확보에 효과적 조력

Ⅲ. 협정문상의 소비자보호

1. 협정문 내용

- 한미FTA 협정문 중 금융, 경쟁 및 전자상거래 등 3개 부문 (Chapter)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조항 포함

<표 6> 한미 FTA 협정문 상의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

부문	내용
금융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 허용 -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정비를 위하여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개방
	○ 금융감독 당국 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정보교환 및 감독협력 - 국경 간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문제 등 해결
경쟁	○ 소비자당국 간 소비자보호법 집행에 있어서 상호 협력 - 소비자정책 협의 및 소비자보호법 운영 관련 정보교환 -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관행 방지를 위한 협력 -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협의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에서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집행기관 간 상호 협력

2. 정책방안

- 한미 FTA 협상 결과 금융정보의 해외 위탁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가 현안으로 등장
 - 2년의 유예기간 중 사전 허용기준 및 사후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

- 협정문은 경쟁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서 상호 협력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담고 있는 바,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
 - 현재 한미 양국의 경쟁당국(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및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간 추진 중인 '정부간 협정'(Government-to-Government Agreement)의 조속 체결 노력 및 동 협정에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반영